

##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 2004. 9. 21 조례 제1357호  
개정 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  
2008. 9. 24 조례 제1611호  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  
일부개정 2026. 4. 17 조례 제338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**제2조(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)** 광명시청에 지역체육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(이하 “직장운동경기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3조(설치종목)** 직장운동경기부에는 검도선수단, 배드민턴선수단(이하 “선수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08. 9. 24>

**제4조(구성)** 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단원은 감독과 코치(이하 “지도자”라 한다) 및 선수로 한다.

**제5조(임용)**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.

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, 임용기간 만료 후 해임되지 않은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6. 4. 17>

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인사위원회)** ① 단원에 대한 임용·보상금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7조(단장 등의 직무)**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, 단원을 지휘·

감독한다.

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·감독하고, 단무를 처리한다.

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단원의 자격)**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08. 6. 16>

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보수 및 실비보상 등)**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·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보상한다. 이 경우 「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.

**제10조(복무)**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.

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, 감독 등 상사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

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단원은 훈련·경기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신분 및 권익보장)**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재해 급여)** 시장은 단원이 질병·부상·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장려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)** ①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**제14조(훈련)** ①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훈련의 원칙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6. 16, 2008. 9. 24>

1. 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.
2.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3.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4. 전지훈련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해외 전지훈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.

**제15조(합숙소 설치 운영)**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징계)**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
2.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때

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9. 24 조례 제161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부칙 <2026. 4. 17 조례 제33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